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0801
----------	-------

제안연월일 : 2026. 8.

제안자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517호)	박지혜의원	2025.04.01.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6.07.15.)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탄소중립 기본법심사소 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068호)	정혜경의원	2025.06.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309호)	박지혜의원	2025.07.0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488호)	서왕진의원	2025.07.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913호)	이재관의원	2025.08.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261호)	이소영의원	2025.08.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678호)	차지호의원	2025.09.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947호)	박지혜의원	2025.09.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4242호)	윤준병의원	2025.11.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5940호)	박지혜의원	2026.01.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6528호)	김위상의원	2026.02.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6634호)	김종민의원	2026.02.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6858호)	정을호· 정혜경의원	2026.02.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7056호)	김소희의원	2026.02.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7460호)	위성곤의원	2026.03.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7500호)	위성곤의원	2026.03.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8250호)	김소희의원	2026.04.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8465호)	이종배의원	2026.04.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8619호)	최혁진의원	2026.04.24.	

나.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2026. 7. 22.)에서 이상 1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2026. 8. 13.)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음. 아울러 감축목표 설정 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편,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및 민간·정책금융의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원칙을 명시하면서 정부가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계의 원활한 중장기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함. 아울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녹색국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녹색산업 육성·지원 시책 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환경교육 지원 및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하며,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범위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 분석 및 탄소예산에 관한 분석을 추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장기감축목표 설정 원칙을 명시하고, 2045년까지의 5년 단위 중장기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하면서 하한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하는 한편,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

나.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함(안 제8조의2).

다. 과학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15명~20명 규모의 기후과학위원회를 둠(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라.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 분석 및 탄소예산 분석·예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6조의2조제2항).

마. 녹색경제·녹색산업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안 제54조제2항).

바. 기후환경교육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 교육 과정에 녹색기술 기초역량 강화를 추가함(안 제67조).

사.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는 한편, 녹색국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68조의3, 제69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

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금융지원, 금융회사의 책무, 채권 발행 지원에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조, 제68조의2, 제68조의4 및 제68조의5).

4. 부대의견

- 금번 개정된 공공금융 지원(§68의2), 금융회사 책무 조항(§68의5)은 금융에 관한 사항인 만큼 금융위에서 주관하여 관련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
 - 다만, 녹색채권(§68의4) 업무에 관해서는 금융위가 주관하되 관련 예산사업을 실제 운영·편성하는 기후부, 기획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활성화 해나갈 것
- 금융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58②에서 규정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이 조속히 별도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된 노력을 강화할 것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 및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중장기감축목표”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경로로서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말한다. 이 경우 감축 목표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감축 비율로 정한다.

18. “녹색금융”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에서 정의한 경제활동 등 녹색산업 및 녹색산업 분야 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환금융”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 또는 정부 등이 수립한 전환경로 등에 기초한 저탄소 전환 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 “금융회사”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5항) 제8호 중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을 “감축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한다.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는 203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를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2035년 이후의 중장기감축목표를 하한 및 상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한다. 이 경우 하한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한다.

④ 정부는 203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의 하한 및 상한을 각각 53

퍼센트 및 61퍼센트로 한다.

⑤ 정부는 204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의 하한은 69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상한은 80퍼센트 수준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정부는 204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의 하한은 84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상한은 90퍼센트 수준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11.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 지원 등)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에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과학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둔다.

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대기, 해양 등 기후변화에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에너지, 산업 공정 등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관련된 공학, 경제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과 관련한 사회과학, 보건, 생태, 식량, 방재, 데이터과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국제법, 국제정책 등 기후변화 및 적응과 관련된 입법·제도 및 국제적 규범체계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 ④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기후과학위원회의 행정, 분석·예측,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기후과학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4(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등) ① 기후과학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예측한다.

1.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방법론 및 진전 동향 등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진전 동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기후과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분석·예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정책 등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조치계획 등을 기후과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보고서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과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보고서의 작성, 권고 및 대국민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제36조의2제1항 중 “제36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온실가스 배출·전망 분석,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를 “기후위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6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2. 온실가스 배출·전망 분석
3.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사·연구
4. 탄소의 사회적 비용(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위기 가속화가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피해를 화폐단위로 추정한 값을 말한다) 분석
5.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수준을 일정한 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우리나라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에 관한 분석·예측
6.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대한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야 한다.

제58조제1항 중 “재원”을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의 촉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중 “및 교육·홍보”를 “·홍보 및 기후환경교육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다)을”을 “한다)과 기후환경교육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교원 연수, 녹색기술 기초역량 강화 등의 교육과정 개발, 학습환경 확충 및 개선 등 학교교육 강화
2.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 강화
3. 기후환경교육,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교육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

제9장의2(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제68조의2(공공금융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보증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6. 그 밖에 자금 공급 또는 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의 자금 공급 및 보증을 위하여 해당 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68조의3(녹색국채의 발행)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이하 “녹색국채”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녹색국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녹색국채는 그 발행 목적에 맞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발행 시 해당 용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녹색국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⑤ 녹색국채의 종류·이율, 발행의 방법과 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4(녹색채권 발행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채권(제2조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자에게 이자 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8조의5(금융회사의 책무 등) ① 금융회사는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의 촉진을 위한 전략·목표·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과 관련된 내부 위원회 설립 및 운영, 전담 임원의 선정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을 주기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는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9조제2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녹색국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의 재원 중 제69조제2항제8호에 따라 녹색국채로 조성된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축목표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204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 및 204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의 상한과 하한은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1. 204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 하한 및 상한 : 2031년 6월 30일
2. 204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 하한 및 상한 : 2036년 6월 30일

제3조(연도별감축목표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수립하는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203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31년부터 2034년까지의 연도별감축목표 : 2027년 6월 30일까지
2. 204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36년부터 2039년까지의 연도별감축목표 : 2031년 12월 31일까지

3. 204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41년부터 2044년까지의 연도별감축목표 : 2036년 12월 31일까지

4.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46년부터 2049년까지의 연도별감축목표 : 2041년 12월 31일까지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같은 법 제8조제1항”을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u>8의2. “중장기감축목표”란 2050</u> <u>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u> <u>간 경로로서 2030년부터 2045</u> <u>년까지 5년 단위로 수립하는</u> <u>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u> <u>목표를 말한다. 이 경우 감축</u> <u>목표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u> <u>순배출량 대비 감축 비율로</u> <u>정한다.</u>
9. ~ 17. (생 략) <u><신 설></u>	9. ~ 17. (현행과 같음) <u>18. “녹색금융”이란 기후위기에</u> <u>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u> <u>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u> <u>금융으로, 「환경기술 및 환</u> <u>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u> <u>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u> <u>체계에서 정의한 경제활동</u> <u>등 녹색산업 및 녹색산업 분</u> <u>야 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u> <u>공하는 것을 말한다.</u>

<신 설>

<신 설>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신 설>

19. “전환금융”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 또는 정부 등이 수립한 전환경로 등에 기초한 저탄소 전환 활동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 “금융회사”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는 203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를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③ 정부는 2035년 이후의 중장
기감축목표를 하한 및 상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한다. 이 경우
하한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한다.

④ 정부는 2035년까지의 중장
기감축목표의 하한 및 상한을
각각 53퍼센트 및 61퍼센트로
한다.

⑤ 정부는 2040년까지의 중장
기감축목표의 하한은 69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상한은 80퍼
센트 수준에서 각각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⑥ 정부는 2045년까지의 중장
기감축목표의 하한은 84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상한은 90퍼
센트 수준에서 각각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⑦ ~ ⑨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⑩ -----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9. (생략)

<신설>

<신설>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신설>

법률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신설>

-----.

1. ~ 7. (현행과 같음)

8. ----- 감축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

9. (현행과 같음)

10.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미치
는 영향

11.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
실과 국제기준

⑪ (현행 제6항과 같음)

⑫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

제8조의2(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
지원 등) 정부는 중장기감축목
표의 이행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설비투
자 및 상용화 등에 대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3(기후과학위원회의 설
치 등) ① 위원회는 과학적 역

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
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
회 산하에 독립적인 기구인 기
후과학위원회를 둔다.

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대기, 해양 등 기후변화에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에서 박
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
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
람

2. 에너지, 산업 공정 등 온실
가스 배출 및 감축과 관련된
공학, 경제학 등 분야에서 박
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
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
람

3.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과 관
련한 사회과학, 보건, 생태,
식량, 방재, 데이터과학 등 분

법률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
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국제법, 국제정책 등 기후변
화 및 적응과 관련된 입법·제
도 및 국제적 규범체계와 관
련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하거
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④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
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기후과학위원회의
행정, 분석·예측,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기후과학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
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신 설>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4(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등) ① 기후과학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예측한다.

1.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방법론 및 진전 동향 등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진전 동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설
치) ① 제36조에 따른 종합정

③ 기후과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분석·예측
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탄
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
성장을 위하여 정책 등의 수정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조치계획 등
을 기후과학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보
고서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
여야 한다. 다만, 기후과학위원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
른 자료의 제출 요청, 보고서의
작성, 권고 및 대국민 공개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설
치) ① 기후위기 -----

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온실
가스 배출·전망 분석, 기후위
기 적응 관련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의
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
와 데이터 생산·관리 등을 통
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
로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과학
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 설>

-----.

② 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1. 제36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2. 온실가스 배출·전망 분석
3.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사·
연구
4. 탄소의 사회적 비용(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위기 가속화가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피해를
화폐단위로 추정한 값을 말한
다) 분석
5.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수준을
일정한 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이후에 허

② (생략) 제54조(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생략) <u><신설></u>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u>재원</u>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 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u>용되는 우리나라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에 관한 분석·예측</u> 6.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4조(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① (현행 제6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항목 호에 대한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 ----- -----<u>녹색금융 및 전환금융의 촉진에 필요한 재원</u>----- ----- ----- ----- ----- -----.
---	--

② (생 략)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사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홍보 및 기후환경교육 지원) ①

-----한다)과 기후환경교육을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
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
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
다.

⑥·⑦ (생 략)

<신 설>

<신 설>

개발, 교원 연수, 녹색기술 기
초역량 강화 등의 교육과정
개발, 학습환경 확충 및 개선
등 학교교육 강화

2.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
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
연계한 교육 강화

3. 기후환경교육, 탄소중립 사
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
련된 교육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

⑥·⑦ (현행과 같음)

제9장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제68조의2(공공금융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18호 또는 제19호
에 해당하는 활동에 우선적으
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보증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
른 한국수출입은행

<신 설>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6. 그 밖에 자금 공급 또는 보
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
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의 자금 공급 및 보증
을 위하여 해당 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68조의3(녹색국채의 발행)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필요
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
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이하 “녹색국채”
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녹색국채는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
제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녹색국채는 그 발행 목적에
맞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어
야 하며, 발행 시 해당 용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녹색국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⑤ 녹색국채의 종류·이율, 발행의 방법과 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4(녹색채권 발행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채권(제2조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자에게 이자 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8조의5(금융회사의 책무 등)

① 금융회사는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의 촉진을 위한 전략·목표·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과 관련된 내부 위원회 설립 및 운영, 전담 임원의 선정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생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7. (생략)

<신설>

8. · 9. (생략)

③ · ④ (생략)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② (생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

③ 금융회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을 주기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는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녹색국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9. · 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